

[]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[] 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 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5일 이내
신고인	① 성명(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② 생년월일	
	③ 주 소	(전화:)	
④ 사 업 의 종 류	(운행형태:)		
⑤ 변 경 연 월 일			
⑥ 변 경 사 항	변 경 전	변 경 후	
⑦ 변 경 사 유			
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대 도 시 권 광 역 교 통 위 원 장
시 · 도 지 사
시 · 도 ○○운송사업조합장
시 · 도 자동차대여사업조합장

귀하

※ 첨부서류

- 신·구 사업계획대비표(관련 운송사업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이 변경된 경우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) 1부
-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변동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) 1부
- 자동차 대수, 보유 차고 면적, 운송부대시설 등의 명칭·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(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변동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) 1부
- 관련 사업자 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관련 운송사업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) 1부
- 예약소의 도면(자동차대여사업 예약소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) 1부
- 주차 대수, 사용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차장 사용확인서, 주차비 납입증명서 또는 주차장 사용계약서(자동차대여사업 예약소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) 1부

수수료

증차: 기본 5,000원
자동차 1대당: 2,000원 추가
운행시간: 1,400원
기타: 2,000원

처리절차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